

2024년 5차 정기이사회 회의록

- ◆ 일 시 : 2024. 12. 23.(월) 17:00
- ◆ 장 소 : 법인사무국

사회복지법인 무일복지재단



《 회 순 》

- 개회선언 대표이사
 - 출석점호 사무국 직원
 - 대표이사인사 대표이사
 - 전차회의록 처리 사무국 직원
 - 심의안건 대표이사
- 제1호 의안 2024년 법인 및 산하시설 2차, 결산추경 예산(안) 승인의 건
-제2호 의안 2025년 법인 및 산하시설 최초예산(안), 사업계획서 승인의 건
-제3호 의안 대명사회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의 건
-제4호 의안 기타안건(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 환경개선준비금 사용의 건)
- 폐회선언 대표이사

2024년 제5차 정기이사회 회의록

1. 일 시 : 2024년 12월 23일(월) 17:00

2. 장 소 : 법인사무국

3. 참석이사 : 대표이사 옥철호, 이사 조희우, 이강혁, 김경수, 곽병해, 박입근, 배상우

4. 회의안건

가. 전차회의록 처리

나. 2024년 법인 및 산하시설 2차, 결산추경 예산(안) 승인의 건

다. 2025년 법인 및 산하시설 최초예산(안), 사업계획서 승인의 건

라. 대명사회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의 건

마. 기타안건(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 환경개선준비금 사용의 건)

5. 개회선언 및 성원보고

- 이준호 사회복지사의 사회로 2024년도 제5차 정기이사회를 개회하다.
- 사회복지사가 총 임원 7명 중 7명이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됨을 보고하자, 옥철호 대표이사는 이를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.
- 옥철호 대표이사는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주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제5차 정기이사회 안건을 설명하면서 이사회를 시작하다.

6. 전차회의록 처리

○ 옥철호 대표이사

- 우선 전차회의록에 대해 심의 의결을 요구하며, 사회복지사에게 전차회의록을 낭독하게 하다.
- 사회복지사의 전차회의록에 대한 낭독이 끝나자, 대표이사는 전차회의록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다.

○ 곽병해 이사 : 전차회의록의 처리에 있어서 원안대로의 의결에 동의를 하다.

○ 배상우 이사 : 재청을 하다.

○ 이사전원 : 전차회의록에 대해 특별히 이의가 없으며, 동의를 하다.

○ 옥철호 대표이사 :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을 하자, 전차회의록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다.

7. 부의안 심의

가. 제1호 의안 : 2024년 법인 및 산하시설 2차, 결산추경 예산(안) 승인의 건

- 옥철호 대표이사 : 기 제출된 자료와 같이 2024년 법인 및 산하시설 2차, 결산 추경 예산(안)에 대해 사회복지사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여, <표1>과 같이 상세히 설명을 하다.

<표1> 2024년 법인 및 산하시설 2차, 결산추경 예산(안)

기관명	2024년 최초예산(A)	2024년 결산추경(B)	증감(B-A)	비고
참좋은무일복지센터 (특별회계)	60,001,000	50,011,000	-9,990,000	

기관명	2024년 1차추경(A)	2024년 결산추경(B)	증감(B-A)	비고
계	6,488,963,000	6,510,390,000	21,427,000	
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	4,912,184,000	4,898,456,000	-13,728,000	
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 (특별회계)	381,362,000	382,621,000	1,259,000	
참좋은우리집	264,175,000	306,475,000	42,300,000	
참좋은무일복지센터 (주간보호)	482,514,000	474,610,000	-7,904,000	
참좋은무일복지센터 (방문요양)	448,728,000	448,228,000	-500,000	

기관명	2024년 2차추경(A)	2024년 결산추경(B)	증감(B-A)	비고
계	4,312,358,000	4,375,320,000	62,962,000	
무일복지재단	691,200,000	674,400,000	-16,800,000	
참좋은재가노인돌봄센터 (재가일반)	387,816,000	393,606,000	5,790,000	
참좋은재가노인돌봄센터 (식사배달)	46,951,000	46,951,000	0	
참좋은재가노인돌봄센터 (맞춤돌봄)	1,079,775,000	1,079,675,000	-100,000	
참좋은지역아동센터	231,316,000	231,688,000	372,000	
참좋은기억학교	501,300,000	534,000,000	32,700,000	
대명사회복지관	1,374,000,000	1,415,000,000	41,000,000	

기관명	2024년 1차추경(A)	2024년 2차 추경(B)	증감(B-A)	비고
참좋은어린이집	870,058,000	873,552,000	3,494,000	

- 옥철호 대표이사 : 2024년 법인 및 산하시설 2차, 결산추경 예산(안)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질의해 줄 것을 말하다.

- 배상우 이사 : 변동이 있는 기관들은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질의하다.
- 이준호 사회복지사 : 참좋은우리집, 참좋은기억학교, 대명사회복지관의 차량 공모사업으로 변동이 있고, 그 외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답하다.
- 박입근 이사 : 차량을 공모 받아 기관들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고 말하며, 원안대로의 승인에 동의한다고 말씀하다.
- 김경수 이사 : 박입근 이사의 동의에 재청을 하다.
- 이사전원 : 법인 및 산하시설 예산(안)을 전원 찬성하다.
- 옥철호 대표이사 : 참석하신 모든 이사의 찬성으로 2024년 법인 및 산하시설 2차, 결산추경 예산(안)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
나. 제2호 의안 : 2025년 법인 및 산하시설 최초예산(안), 사업계획서 승인의 건

- 옥철호 대표이사 : 기 제출된 자료와 같이 2025년 법인 및 산하시설 최초예산(안),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회복지사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여, <표2>와 같이 상세히 설명을 하다.

<표2> 2025년 법인 및 산하시설 최초예산(안)

기관명	2024년 결산추경(A)	2025년 최초예산(B)	증감(B-A)	비고
계	10,935,721,000	11,331,489,250	395,768,250	
무일복지재단	674,400,000	715,000,000	40,600,000	
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	4,898,456,000	5,060,384,000	161,928,000	
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 (특별회계)	382,621,000	394,333,000	11,712,000	
참좋은재가노인돌봄센터 (재가일반)	393,606,000	285,840,000	-107,766,000	
참좋은재가노인돌봄센터 (식사배달)	46,951,000	47,451,000	500,000	
참좋은재가노인돌봄센터 (맞춤돌봄)	1,079,675,000	1,096,247,000	16,572,000	
참좋은지역아동센터	231,688,000	252,254,000	20,566,000	
참좋은우리집	306,475,000	285,470,000	-21,005,000	
참좋은기억학교	534,000,000	509,000,000	-25,000,000	

참좋은무일복지센터 (주간보호)	474,610,000	477,675,000	3,065,000	
참좋은무일복지센터 (방문요양)	448,228,000	463,870,000	15,642,000	
참좋은무일복지센터 (특별회계)	50,011,000	80,020,000	30,009,000	
대명사회복지관	1,415,000,000	1,397,000,000	-18,000,000	
신규 “참좋은노인복지센터” (방문요양)	0	266,945,250	266,945,250	

○ 옥철호 대표이사 : 2025년 법인 및 산하시설 최초예산(안), 사업계획서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질의해 줄 것을 말하다.

○ 곽병해 이사 : 사업의 확장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며, 원안대로의 승인에 동의한다고 말씀하다.

○ 이강혁 이사 : 곽병해 이사의 동의에 재청을 하다.

○ 이사전원 : 법인 및 산하시설 최초예산(안) 및 사업계획서를 전원 찬성하다.

○ 옥철호 대표이사 : 2025년 법인 및 산하시설 최초예산(안), 사업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
다. 제3호 의안 : 대명사회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의 건

○ 옥철호 대표이사 : 기 제출된 자료와 같이 무일복지재단 산하 대명사회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에 대해 사회복지사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여, <표3>과 같이 상세히 설명을 하다.

<표3> 대명사회복지관 운영규정의 신규대조표

구분	현행	변경 후	비고
인사규정	제9조(회의의 원칙) 제2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, 회의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단, 제1인사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무일복지재단의 규정에 따른다.	제9조(회의의 원칙) <u>인사위원회의 회의</u> 는 공개하지 아니하며, 회의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	
	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제2인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주관하며, 이를 소집하고 표결권을 가진다. 단, 제1인사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무일복지재단의 규정에 따른다.	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<u>인사위원장은</u>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주관하며, 이를 소집하고 표결권을 가진다.	

구 분	현행	변경 후	비고
인 사 규 정	<p>제11조(위원장의 직무대행) 제2인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석일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. 단, 제1인사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무일복지재단의 규정에 따른다.</p> <p>제12조 (의사·의결정족수)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 가부동수일 때에는 제2인사위원장이 결정한다. 단, 제1인사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무일복지재단의 규정에 따른다.</p> <p>제13조(회의내용의 기록) 제2인사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자료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 단, 제1인사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무일복지재단의 규정에 따른다.</p> <p>제14조(회의결과의 보고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2인사위원회 간사는 회의에 관한 기록을 회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전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제2인사위원회 회의기록 및 보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위원은 즉시 간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 제2인사위원회 회의기록의 보고·확인 필요 여부는 해당 회의에서 결정한다. 	<p>제11조(위원장의 직무대행) <u>인사위원장이</u>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석일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.</p> <p>제12조(의사·의결정족수)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 가부동수일 때에는 <u>인사위원장이</u> 결정한다.</p> <p>제13조(회의내용의 기록) <u>인사위원회의</u>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자료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제14조(회의결과의 보고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인사위원회</u> 간사는 회의에 관한 기록을 회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전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u>인사위원회</u> 회의기록 및 보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위원은 즉시 간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 <u>인사위원회</u> 회의기록의 보고·확인 필요 여부는 해당 회의에서 결정한다. 	
제 규 정	<p>제 32 조 (특별휴가)</p> <p>7. 직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수강의 경우 유급휴가로 허가할 수 있다. 단, 출강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제 34 조 (출산전후휴가)</p> <p>4.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치료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.</p>	<p>제 32 조 (특별휴가)</p> <p>7. 직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수강의 경우 유급휴가로 허가할 수 있다. 단, 출강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. (삭제)</p> <p>7. 장기근속직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유급으로 장기근속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. (신설)</p> <p>가.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: 5일</p> <p>나.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 : 10일</p> <p>다.20년 이상 재직자 : 10일</p> <p>라.1회당 휴가일수는 5일 이상 10일 이내로 한다.</p> <p>마.장기근속휴가를 1회 사용(분할사용포함)한 경우, 최소 1년이 경과한 후 추가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8. 영·유아, 초·중·고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해 연 2일의 자녀돌봄 특별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. (신설)</p> <p>제 34 조 (출산전후휴가)</p> <p>4.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치료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.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.</p>	<p>사회복지 종사자 취우개선 시책적용</p>

구분	현행	변경 후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무일복지재단 운영규정	<p>제 35조 (육아휴직 및 시간) 복지관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.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.</p>	<p>제 35조 (육아휴직 및 시간) 복지관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p>제 36조 (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)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산입한다.</p> <p>[별표1]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대 상</th> <th>일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결혼</td> <td>본인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>자녀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출산</td> <td>배우자</td> <td>10</td> </tr> <tr> <td>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사망</td> <td>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</td> <td>3</td> </tr> <tr> <td>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</td> <td>3</td> </tr> <tr> <td>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입양</td> <td>본인</td> <td>2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대 상	일수	결혼	본인	5	자녀	1	출산	배우자	10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	사망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	입양	본인	20	<p>제 36조 (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)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 휴가에는 산입한다.</p> <p>[별표1]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대 상</th> <th>일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결혼</td> <td>본인</td> <td>7</td> </tr> <tr> <td>자녀</td> <td>2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출산</td> <td>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</td> <td>7</td> </tr> <tr> <td>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</td> <td>3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사망</td> <td>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</td> <td>3</td> </tr> <tr> <td>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</td> <td>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대 상	일수	결혼	본인	7	자녀	2	출산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7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	사망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	취업규칙 일부준용
	구분	대 상	일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결혼	본인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자녀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산	배우자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망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입양	본인	2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대 상	일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결혼	본인	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자녀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산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망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 50 조 (건강진단) 1.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,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. 2. 건강진단 결과 치료를 요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	<p>제 50 조 (건강진단) 1.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,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. 2. 건강진단 결과 치료를 요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3. 건강검진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1인당 3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. (신설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- 옥철호 대표이사 : 무일복지재단 산하 대명사회복지관의 운영규정 개정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질의해 줄 것을 말한다.
- 배상우 이사 : 필요에 의한 운영규정 변경으로 보이며, 원안대로의 승인에 동의한다고 말씀하다.
- 광병해 이사 : 배상우 이사의 동의에 재청을 하다.
- 이사전원 : 무일복지재단 산하 대명사회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을 전원 찬성하다.
- 옥철호 대표이사 : 참석하신 모든 이사의 찬성으로 무일복지재단 산하 대명사회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
라. 제4호 의안 : 기타안건(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 환경개선준비금 사용의 건)

- 옥철호 대표이사 : 기 제출된 자료와 같이 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 환경개선준비금 사용에 대해 사회복지사에게 상세히 설명토록 하다.
- 이준호 사회복지사 : 무일복지재단 산하 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에서 장기요양평가를 대비 환경개선을 위하여 침대커튼 설치 및 환경정리에 특별회계의 환경개선준비금 20,000,000원정도 사용할 예정이라 말하다.
- 옥철호 대표이사 : 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 환경개선준비금 사용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질의해 줄 것을 말하다.
- 김경수 이사 : 시설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평가준비를 잘 하길 당부하고, 원안대로의 승인에 동의한다고 말씀하다.
- 배상우 이사 : 김경수 이사의 동의에 재청을 하다.
- 이사전원 : 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 환경개선준비금 사용을 전원 찬성하다.
- 옥철호 대표이사 : 참석하신 모든 이사의 찬성으로 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 환경개선준비금 사용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
8. 폐회

- 옥철호 대표이사 : 기타 토의사항이 없는지 참석 이사들에게 묻고, 없음을 확인 후 폐회를 선언하다(17:50).

이상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무일복지재단의 2024년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2024년 법인 및 산하시설 2차, 결산 추경예산(안) 승인의 건, 2025년 법인 및 산하시설 최초예산(안), 사업계획서 승인의 건, 대명사회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의 건, 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원 환경개선준비금 사용의 건이 결의되었으므로 이를 증빙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하다.

2024년 12월 23일

대표이사 옥 철 호 (인)

이사 이 강 혁 (인)

이사 곽 병 해 (인)

이사 배 상 우 (인)

감사 이 진 복 (인)

이사 조 희 우 (인)

이사 김 경 수 (인)

이사 박 입 근 (인)

감사 전 선 익 (인)